|  |  |  |
| --- | --- | --- |
|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13년 제1호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 관리방법》이 2013년 2월 17일의 상무부 제7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13년 3월 15일  **제1조** 중고 전기기계제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자원의 종합 이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이라 함은 이미 소비영역에 들어갔고 기존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냉동에어컨기구, 청정기구, 주방기구, 통풍기구, 난방 및 다리미기구, 개인간호기구, 보건기구, 오락기구 등의 전기제품과 음향오락, 정보기술 등 종류의 전자제품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함)라 함은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매나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공상업자를 가리킨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이라 함은 경영자가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 판매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관련 표준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신의성실,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상무부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에 대한 업계 관리를 실시하고 업계 발전계획, 정책을 제정한다.  현급 이사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에 대한 업계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유관 업계협회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를 위해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중고 전기전자제품 보존서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종업자의 신의성실 경영 보존서류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역할을 발휘한다.  **제7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할 때 수매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정보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품명, 상표, 사이즈, 판매자의 원시 구매증빙서류 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이 포함된다.  **제8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보존서류 자료를 건립하여야 한다. 보존서류 자료에는 제품의 수매등록정보, 품질성능상태, 주요부품의 수리, 수선 상황과 후 부품의 상표, 생산자 정도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9조** 경영자는 유통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 기(사)업단위 및 개인의 정보를 중고 전자전자제품 유통활동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중고 전기전자제품이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상기 제품을 수매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밀과 관련되는 사용중지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활동에서 탈퇴하는 경우 《국가기빌 보호법》과 국과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경영자는 다음의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할 수 없다.  (1) 법에 따라 차압, 압류된 전기전자제품  (2) 절도, 강탈, 사기, 밀수 또는 기타 불법 범죄수단으로 취득한 것을 분명히 아는 전기전자제품  (3) 합법적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  (4)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매를 금지하는 전기전자제품.  **제11조**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은 뚜렷한 위치에 중고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품의 품질성능 상황, 주요부품의 수리, 수선 등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수선제품을 신제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증빙서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의 무료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고 전기전자제품이 아직도 "수리, 교체, 반환" 유효기간 내인 경우 경영자는 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판매대장을 설치하여 판매상황을 여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자는 다음의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사용기능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국가의 강제적 폐기조건에 도달한 경우  (2) 인체 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 등 강제적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제15조** 중고 전기전자제품시장은 중고 전기전자자제품경영자 보존서류를 구축하고 시장 내 경영자의 신원정보와 신용정보를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판매제품의 품명, 상표, 사이즈, 물량, 단가, 중개판매회사 등내용을 포함한 경영자의 중고 전기전자제품 판매 관련정보를 지체 없이 집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업계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정책과 종합 조율 등을 촉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질서를 규율하고 업계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비추어 정기 검사 및 비정기검사 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지체 없이 발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중고 전기전자제품시장은 상무주무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보와 서류를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붕 상무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업계 통계업무를 조직하여야 하며, 경영자는 상무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과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인터넷을 통해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매와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 집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旧电器电子产品流通管理办法**  商务部令2013年第1号  《旧电器电子产品流通管理办法》已经2013年2月17日商务部第74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3年5月1日起施行。  部 长:陈德铭  2013年3月15日  **第一条**　为加强对旧电器电子产品流通的管理，促进资源综合利用，保护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旧电器电子产品，是指已进入消费领域，仍保持全部或者部分原有使用价值的电器电子产品。包括制冷空调器具、清洁器具、厨房器具、通风器具、取暖熨烫器具、个人护理器具、保健器具、娱乐器具等电器产品和音像娱乐类、信息技术类等电子产品。  　　本办法所称旧电器电子产品经营者（以下简称经营者）是指从事旧电器电子产品收购或销售活动的法人、其他经济组织和个体工商户。  **第三条**　本办法所称旧电器电子产品流通，是指经营者收购和销售旧电器电子产品的活动。  **第四条**　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和有关标准从事经营活动，遵循诚实、守信、公平、公开的原则。  **第五条**　商务部负责旧电器电子产品流通的行业管理工作，负责制定行业发展规划、政策。  　　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旧电器电子产品流通的行业管理工作。  **第六条**　相关行业协会依照章程规定，积极为经营者服务，组织专业技能培训，完善旧电器电子产品档案信息系统，建立企业、从业人员诚信经营档案，发挥行业自律作用。  **第七条**　经营者收购旧电器电子产品时应当对收购产品进行登记。登记信息应包括旧电器电子产品的品名、商标、型号、出售人原始购买凭证或者出售人身份信息等。  **第八条**　经营者应当建立旧电器电子产品档案资料。档案资料应当包括产品的收购登记信息，质量性能状况、主要部件的维修、翻新情况和后配件的商标、生产者信息等情况。  **第九条**　经营者不得将在流通过程中获得的机关、企（事）业单位及个人信息用于与旧电器电子产品流通活动无关的领域。旧电器电子产品涉及商业秘密、个人隐私的，出售人应当在出售前妥善处置相关信息，经营者收购上述产品前应作出提示。  　　退出使用的涉密旧电器电子产品的流通活动应当符合《保守国家秘密法》和国家有关保密规定。  **第十条**　禁止经营者收购下列旧电器电子产品：  　　（一）依法查封、扣押的；  　　（二）明知是通过盗窃、抢劫、诈骗、走私或其他违法犯罪手段获得的；  　　（三）不能说明合法来源的；  　　（四）其他法律、行政法规禁止收购的。  **第十一条**　待售的旧电器电子产品应在显著位置标识为旧货。  **第十二条**　经营者销售旧电器电子产品时，应当向购买者明示产品质量性能状况、主要部件维修、翻新等有关情况。严禁经营者以翻新产品冒充新产品出售。  **第十三条**　经营者应当向购买者出具销售凭证或发票，并应当提供不少于3个月的免费包修服务，交易双方另有约定的除外。旧电器电子产品仍在三包有效期内的，经营者应依法履行三包责任。  　　经营者应当设立销售台账，对销售情况进行如实、准确记录。  **第十四条**　禁止经营者销售下列旧电器电子产品：  　　（一）丧失全部使用功能或达到国家强制报废条件的；  　　（二）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等强制性标准要求的；  　　（三）其他法律、行政法规禁止销售的。  **第十五条**　旧电器电子产品市场应当建立旧电器电子经营者档案，如实记录市场内经营者身份信息和信用信息。  **第十六条** 国家鼓励旧电器电子产品市场建立信息管理系统，及时统计经营者收购和销售旧电器电子产品相关信息，包括销售产品品名、商标、型号、数量、单价、经销商等内容。  **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应当通过制定行业发展规划、促进政策和综合协调等方式，规范旧电器电子产品流通秩序，促进行业发展。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应当根据本地实际，建立定期检查及不定期抽查制度，及时发现和处理有关问题。经营者和旧电器电子产品市场应配合商务主管部门的监督检查，如实提供信息和材料。  　　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应当组织本行政区域内的行业统计工作，经营者应按照商务主管部门要求及时报送相关信息和数据。  **第十九条** 经营者违反本办法第七条、第八条、第十五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逾期不改正的，可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  **第二十条** 经营者违反本办法第九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三条、第十八条规定的，由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关部门依法处理；法律法规未作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逾期不改正的，可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条、第十四条规定的，由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关部门依法处理；法律法规未作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逾期不改正的，可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二条** 通过互联网开展旧电器电子产品收购和销售活动的，参照本办法执行。  **第二十三条** 本办法自2013年5月1日起施行。 |